

●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-39호

환경부고시 「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」(제2025-165호, 2025.10.1.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5년 12월 02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고시

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”을 “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”을 “별표 2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경우(단,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)”를 “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